

# 예 산 총 칙

2012년도 추경 3회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35,784,561	10,073,537
일반회계	298,069,695	8,942,091
특별회계	37,714,866	1,131,446
기타특별회계	37,714,866	1,131,446
상수도특별회계	9,694,331	290,83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54,461	22,634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876,448	56,29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38,182	19,145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13,256,897	397,70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301,091	9,033
기반시설특별회계	16,012	480
청사건립특별회계	11,177,444	335,323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015,652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3,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 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 직무수행경비
3. 법정의무부담금(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5. 재해대책 및 복구비

제 6 조 회계연도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금(세), 재정보전금, 특정목적기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